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70
----------	------

발의년월일 : 2008. 11.
발 의 자 : 강기태 의원 외 8인

제안이유

-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함.(제2조)
- 시장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함. (제3조)
- 법 제7조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안산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제5조)
-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시설의 협의, 시공 및 준공전에 실시 하며,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완공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점검"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시장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검사)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안산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 시기는 대상 시설의 협의, 시공 및 준공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시에 점검요원을 두되 장애인담당과장이 당연직 반장으로 한다.
- ② 점검요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안산시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 및 자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 중에서 시장이 5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점검요원의 직무) 점검요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을 한다.

-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반장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대상 시설물	소재지										
	명 청										
	용 도										
	기 타										
시 설 주	성 명		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검자 종합의견											
<p>「안산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table> <tr> <td>점검자</td> <td>서명(인)</td> </tr> <tr> <td></td> <td>서명(인)</td> </tr> <tr> <td></td> <td>서명(인)</td> </tr> <tr> <td>담당공무원</td> <td>서명(인)</td> </tr> </table> <p>안 산 시 장 귀하</p>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점검자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서명(인)										
첨부서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70
----------	------

제안년월일 : 2008. 11. 13.
제안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정 이유

- 조례 제명 및 일부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를 수정함.

2. 주요 골자

- 조례 제명을 명확히 규정함.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내지 제14조를 제3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u>안산시 공공시설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u>	<u>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u>
<u>제3조(편의시설 설계도면 점검) 시장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면을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u>	<u>< 삭제 ></u>
<u>제4조(편의시설 설치 검사) 시장은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u>	<u>< 삭제 ></u>
<u>제5조</u>	<u>제3조 (원안 제5조와 같음)</u>
<u>제6조</u>	<u>제4조 (원안 제6조와 같음)</u>
<u>제7조(구성) ① (생략)</u>	<u>제5조(구성) ① (원안과 같음)</u>
<u>② 점검요원은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안산시 건축사회, 학계, 공무원 및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요원 중에서 시장이 5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②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u>
<u>③ (생략)</u>	<u>③ (원안과 같음)</u>
<u>제8조</u>	<u>제6조 (원안 제8조와 같음)</u>
<u>제9조</u>	<u>제7조 (원안 제9조와 같음)</u>
<u>제10조</u>	<u>제8조 (원안 제10조와 같음)</u>
<u>제11조</u>	<u>제9조 (원안 제11조와 같음)</u>
<u>제12조</u>	<u>제10조 (원안 제12조와 같음)</u>
<u>제13조</u>	<u>제11조 (원안 제13조와 같음)</u>
<u>제14조</u>	<u>제12조 (원안 제14조와 같음)</u>